

#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유의서

**[제1조(목적)]** 이 유의서는 수협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이하의 물품의 구매, 제조, 용역, 기타 계약(매각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)에 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**[제2조(정보보호 및 비밀유지)]**

- ① 입찰자는 당해 입찰수행중 받은 모든 정보 또는 은행의 기밀사항을 입찰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.
- ② 입찰자는 입찰 수행 중에 얻은 은행의 내부정보 및 고객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,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전자금융감독규정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 또한 은행의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.
- ③ 입찰자는 입찰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은행이 반환 요구 시 또는 더 이상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지체 없이 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유지의무는 본 입찰 해지 및 입찰 종료 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,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한다.
- ⑤ 입찰자는 은행이 실시하는 내부통제 . 보안교육을 은행이 요청 시 반드시 받아야 한다.

## **[제3조(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)]**

- ① 은행이 계약체결 후 입찰시 제출한 자료등으로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 금액에서 감액 및 환수 청구 할 수 있다.
- ② 입찰자는 은행 또는 감독기관에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,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은행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및 환수 청구 할 수 있다.

## **[제4조(손해배상)]**

- ① 입찰자는 제2조(정보보호 및 비밀유지) 위배사유로 인하여 은행 및 제3자에게 정신적, 신체상, 재산상 등 일체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② 입찰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조회 및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. 신원 사고 발생으로 은행 및 제3자에게 신체상, 재산상 등 일체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③ 부정당업자는 은행 계약준칙 제90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) 및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”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당해 제한 기간 내에는 은행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할수도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도 안된다.